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5-07-22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5누5312 취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REDACTED]도

제1심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4구합557 판결

변론종결 2015. 5. 14.

판결선고 2015. 6. 4.

주문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B 건설기계에 관한 취득세 4,799,440원(2014. 3. 18. 기준, 가산세 포함) 납부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별지 관계법령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피고는, 취득세의 징세의무는 구 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신고행위의 당연무효를 전제로 조세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경우 시·군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전라남도를 피고로 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39조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적격을 갖는다. 한편, 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2항 제1호 가목,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을 종합하여 볼 때, 시(市)가 도세(道稅)인 취득세를 신고·납부받아 도(道)에 납입하는 것은 도사무의 처리에 불과하여 시가 취득세를 신고·납부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취득세의 귀속주체는 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시는 취득세의 징수사무를 처리하는 지방



자치단체일 뿐 취득세의 귀속주체가 아니므로 취득세에 관한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의 피고적격이 없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27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기계에 관한 취득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의 개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범죄목적을 위하여 명의를 대여한 원고 본인이 스스로 한 것으로서 당초부터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더 보호받아야 하고, 따라서 범죄행위가 발각된 이후에서야 그 신고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은 원고로부터 명의를 빌린 뒤 2011. 1. 6. 임의로 생성한 차대번호 등을 이용하여 제작하지도 않은 건설기계를 서류상 존재하는 것처럼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원고를 소유자로 등록한 뒤 이를 담보로 신용협동조합 등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2. 9. 5.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 8,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여 준 데에서 더 나아가 C의 위와 같은 범죄행위에 가담하지는 않았고(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 기계에 관한 취득세 신고도 원고가 아닌 C이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그 이유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5-07-22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병칠

판사 박현수

판사 장찬수